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정부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여 과중된 청소예산 부담을 경감하고
- 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인 봉투 판매소의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며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기존의
대형폐기물 납부 스티커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량제 봉투 품목 및 가격의 현실화 및 봉투 판매소의 이윤 상향
조정(안 별표5)
 - 리터당 30원으로 가격 일괄기준 적용 및 비사용 봉투 규격 삭제
 - 현행 평균 6.9%에서 9.4%로 인상
- 나.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변경(안 별표3)
- 다.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기재사항(배출자 성명, 연락처) 삭제
(안 별표6)
-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신설
 - 당초 :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함께 명시(안 별표1)
 - 변경 :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수료를 분리하여 신설(안 별표8)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본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처리시설에”를 “처리시설에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상적인 생활 쓰레기가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1톤 이상의 다량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비용”을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4조제3항 중 “3리터, 5리터”를 “5리터”로, “30리터, 50리터”를 “50리터”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제19조의2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영 제38조의4의 별표 8 중 제2호 개별기준의 가, 나목의 위반행위로 제한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 공급된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및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을 유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
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
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 ⑨ (생 략)

<신 설>

-----.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의2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

리 협조) ① 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
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
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
니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
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상적인 생활 쓰레기가 아
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1톤 이상
의 다량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
거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서를 발급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략)

<신 설>

② (생략)

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② (생략)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u>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u>로 하고 크기 등의 규격은 환경부의 표준규격으로 한다. ④ (생략) 제19조의2(신고요령) ① (생략) ② <u>제19조의2제1항</u>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해당신고 건에 대한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u>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제18조 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의 위반행위 중 가, 나</u>의 행위로 <u>제한된다.</u> ②·③ (생략)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5리터</u> ----- <u>50리터</u> ----- -----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신고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u>----- ----- ----- ----- -----.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u>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영 제38조의4의 별표 8 중 제2호 개별기준의 가, 나</u>목의 위반행위로 <u>제한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	---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수수료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주방용품			
장농	폭120cm이상1쪽	15,000		식탁	6인이상	5,000	
	폭120cm미만1쪽	10,000			6인미만	4,000	
문갑,화장대	모든규격	3,000		교자상	대형(4인이상)	2,000	
					소형(4인미만)	1,000	
장식장 (폭또는높이)	1m이상	6,000		쌀통	모든규격	2,000	
	1m미만	4,000			1쪽	3,000	
서랍장	4단이상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4단미만	2,000			높이1m미만	2,000	
책장 (폭또는높이)	1m이상	4,000		전기(압력)밥솥	모든규격	2,000	
	1m미만	2,000			모든규격	3,000	
신발장	모든규격	2,000		믹서기,분쇄기	모든규격	1,000	
					인공건조(동력)	4,000	
책상	양수(대형)	5,000		식기(세척)건조기	자연건조(무동력)	2,000	
	편수(소형)	4,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가전제품			
				TV	25인치 이상	5,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3,000			25인치 미만	3,000	
	4단미만	2,0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옷걸이	스탠드형	2,000			모든규격	3,000	
				오디오	폭또는높이1m이 상	5,000	
의자	모든규격	2,000			폭또는높이1m미만	3,000	
				냉장고	스피커1쪽당	2,000	
쇼파	4인용이상	5,000			500 L 이상	8,000	
	4인용미만	3,000			300L이상-500L미만	6,000	
침대 (메트리스 포함)	더블,퀸사이즈	15,000			300 L 미만	4,000	
	싱글	10,000			264㎡형 이상	8,000	
매트리스	더블,퀸사이즈	8,000			66㎡형 이상 ~264㎡형 미만	5,000	
	싱글	5,000			66㎡형미만	3,000	
침대 (돌, 옥, 황토)	2인용	30,000			높이1m이상	4,000	
	1인용	20,000		공기청정기	높이1m미만	2,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20,000					
탁자	모든규격	3,000					

(수수료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전자오락기(게임기)	높이1m이상	10,000		거울	1㎡이상	3,000	
	높이1m미만	5,000			1㎡미만	1,000	
개인용컴퓨터	본체	2,000		수족관	1㎡이상	5,000	
	모니터	2,000			1㎡미만	3,000	
	프린터기	2,000		카페트, 돛자리	1㎡이상	4,000	
	키보드	1,000			1㎡미만	2,000	
	스피커(대형)	2,000		변기	양변기	10,000	
	스피커(소형)	1,000			좌변기	5,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비 데	3,000	
선풍기	모든규격	2,000		화분	높이 또는 직경 50cm이상	2,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높이 또는 직경 50cm미만	1,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이불	솜이불(장당)	2,000	
복사기	모든규격	15,000			홀이불(장당)	1,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벽시계	대형(1m이상)	5,000	
	모든규격	2,000			중형 (0.5㎡이상~1㎡미만)	3,0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소형 (0.5㎡미만)	1,000	
세탁기, 건조기	모든규격	4,000		장판	3㎡당	1,000	
전기담요	모든규격	2,000					
난방용품							
난로	높이1m이상	5,000		깨진유리, 항아리	1kg당	1,000	
	높이1m미만	2,000		보일러	모든규격	3,000	
보일러등유류통	1톤당	5,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욕조	모든규격	5,000	
악기				세면대	모든규격	3,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폐소화기 (규격기준)	15kg 이상	7,000	
	어프라이트	10,000			7kg~15kg미만	5,000	
오르간	모든규격	4,000			3.3kg 이상	3,000	
	모든규격	4,000			3.3kg 미만	2,000	
기타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자전거	어른용	4,000		플라스틱장난감	대형(20kg이상)	5,000	
	어린이용	2,000			소형(20kg미만)	1,000	
보행기, 유모차	모든규격	2,000		우산	개당	1,000	
카시트	모든규격	3,000					
여행용가방	모든규격	2,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전화기	모든규격	1,000					
액자	1㎡이상	3,000		스티로폼 (재활용 불가품)	1㎡미만	15,000	
	1㎡미만	1,000			1㎡초과0.1㎡마다	1,500	
타이어	립외경19인치이상	5,000			5㎡미만	75,000	
	립외경19인치미만	3,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물탱크저수조	1톤당	5,000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제15조5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미시 마크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종량제봉투(ℓ)

_____ 일 반 용 _____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일몰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
(봉투주문 ☎)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	--	--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미시 마크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종량제봉투(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
(봉투주문 ☎)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미시 마크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20ℓ

1.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3.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봉투에 넣어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미시장

연락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

(봉투주문 ☎)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미시 마크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종량제봉투(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종량제봉투는 일몰 후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교환 및 환불되지 않는 봉투입니다.

구미시장

연락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

(봉투주문 ☎)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표(제10조제2항 관련)

종류	업소이윤 (원)	기간별 판매가격(원)	
		2020.6.30까지	2020.7.1부터
봉투 5ℓ	15	120	150
봉투 10ℓ	30	200	300
봉투 20ℓ	55	410	600
봉투 50ℓ	135	900	1,500
봉투 100ℓ	270	1,800	3,000
마대 10ℓ	100	1,000	

[별표 6]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table border="1"> <tr> <td>No.10-</td> <td>판매소보관용(10,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품목:</td> </tr> <tr> <td>금 일만원(₩10,000)</td> <td>성명:</td> </tr> <tr> <td>구 미 시</td> <td></td> </tr> </table>	No.10-	판매소보관용(10,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일만원(₩10,000)	성명:	구 미 시		<table border="1"> <tr> <td>No.05-</td> <td>판매소보관용(5,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품목:</td> </tr> <tr> <td>금 오천원(₩5,000)</td> <td>성명:</td> </tr> <tr> <td>구 미 시</td> <td></td> </tr> </table>	No.05-	판매소보관용(5,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오천원(₩5,000)	성명:	구 미 시	
No.10-	판매소보관용(10,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일만원(₩10,000)	성명:																
구 미 시																	
No.05-	판매소보관용(5,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오천원(₩5,000)	성명:																
구 미 시																	
																	
<table border="1"> <tr> <td>No.03-</td> <td>판매소보관용(3,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품목:</td> </tr> <tr> <td>금 삼천원(₩3,000)</td> <td>성명:</td> </tr> <tr> <td>구 미 시</td> <td></td> </tr> </table>	No.03-	판매소보관용(3,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삼천원(₩3,000)	성명:	구 미 시		<table border="1"> <tr> <td>No.02-</td> <td>판매소보관용(2,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품목:</td> </tr> <tr> <td>금 이천원(₩2,000)</td> <td>성명:</td> </tr> <tr> <td>구 미 시</td> <td></td> </tr> </table>	No.02-	판매소보관용(2,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이천원(₩2,000)	성명:	구 미 시	
No.03-	판매소보관용(3,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삼천원(₩3,000)	성명:																
구 미 시																	
No.02-	판매소보관용(2,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이천원(₩2,000)	성명:																
구 미 시																	
	- 규 격 : 내부지름 : 6.5cm 외부지름 : 8cm - 재 질 : 특강지 - 글 씨 : 검정색 - 바탕색 : 1,000원 : 노랑색 2,000원 : 주황색 3,000원 : 연녹색 5,000원 : 청 색 10,000원 : 연자주 - 둘레원 바탕색 : 1,000원 : 청 색 2,000원 : 노란색 3,000원 : 녹색 5,000원 : 청 색 10,000원 : 자 주 - 둘레원글씨체 : 흰색																
<table border="1"> <tr> <td>No.01-</td> <td>판매소보관용(1,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품목:</td> </tr> <tr> <td>금 일천원(₩1,000)</td> <td>성명:</td> </tr> <tr> <td>구 미 시</td> <td></td> </tr> </table>	No.01-	판매소보관용(1,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일천원(₩1,000)	성명:	구 미 시										
No.01-	판매소보관용(1,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목:																
금 일천원(₩1,000)	성명:																
구 미 시																	

[별표 8]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0조제1항제4호 관련)

구 분	부과 단위	수수료	비고
공사장생활폐기물	100kg 이하	7,800원	
	100kg 초과 100kg 마다	7,800원 추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

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김 덕 종
	담 당	이 운 균
	담 당 자	김 영 혜 (480-5206)